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883호 2024. 4. 11.(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59호 도로구역(시도2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54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4

○ 사천시 공고 제2024-555호 모례(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 5

○ 사천시 공고 제2024-56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

○ 사천시 공고 제2024-57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사천시 공고 제2024-584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83호

사천시 고시 제2024-59호

도로구역(시도2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시도	24호선	덕곡 ~ 용치	용현명 용치리 일원	2,160㎡	시도10 호선	용치리 46-1	-	0.12km
변경	시도	25호선	덕곡 ~ 용치	용현명 용치리 일원	5,460㎡	시도10 호선	용치리 193-2	-	0.4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용치~백천간 도로 개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사천시청 도로과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

사 천 시 공 보

제883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3,660	소로 1-58	용치리 46-1	일반 도로		2011.08.04.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변경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3,942	소로 1-58	용치리 193-2	일반 도로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정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80호선	소로 2-180호선	◦노선 연장 - 연장 : 3,660m→3,942m (증, 282m) - 폭원 : 8m	◦도로 연장 개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경작로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코자함

2. 관련도서 : 게재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부 도로(소로2-180호선))사업

나) 명　　칭 : 용치~백천간 도로 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소로2-180호선 L=282.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도로과)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참조

사천시 공고 제 2024-54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4. 11.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4. 4. 11. ~ 2024. 4. 26.(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87머3238	MPK 제트스키트레일러	배*철	2024. 4. 1.	차량소재 불명으로 운행정지 신청함.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고 제2024-555호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4 및 제14조의2에 따라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나. 명　　칭: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및 면적: 사천시 향촌동 모례,신향마을 일원(15,000㎡)

나. 사업규모: 수중방파제설치 50m(2개소), 관거개량 480.5m 월파벽설치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수립 공고일

나. 준공예정일: 2026. 12. 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 내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향촌동	709-13	도	34	34	사천시				
2	〃	709-11	대	258	258	사천시				
3	〃	709-10	대	284	284	사천시				
4	〃	709-9	대	202	202	사천시				
5	〃	709-8	답	288	288	사천시				
6	〃	709-6	답	112	112	사천시				
7	〃	709-2	잡	407	407	사천시				
8	〃	703-3	대	98	98	사천시				
9	〃	1276	구	674	674	사천시				
합계				2,357	2,357					

6. 열람기간 및 장소(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가. 열람기간: 공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고 제2024-56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국내여행업	주식회사 삼포우등관광	오**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234(용강동)
국내외여행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6.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5. 2. (21일간)

7. 게시장소: 사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8. 의견제출처: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연락처: 055-831-2726 / 팩스: 055-831-6024 / E-mail: jeg88@korea.kr

9. 의견제출기한: 2024. 5. 2.까지

10.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관광진흥과(☎055-831-27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3">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 colspan="2">성명(명칭)</td></tr>
<tr><td colspan="2">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 colspan="2"></td></tr>
<tr><td>기 타</td><td colspan="2"></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천시 공고 제2024-57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정비를 권고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조항 일부 개정(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제척사항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안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제46조)
- 사용료·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26, FAX: 831-602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객관적이”를 “객관적인”으로, “신청이”를 “기피 신청이”로,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를 “위원회는 의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로 한다.

6. 제6항에 따라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정원은 7명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항에 따라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하고, 또한 불공정한 심의를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 당사자	⑥ ---------- 객관적인 ---------- 기피 신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 한다.	청이 --------- 위원회는 의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생략)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맡겨야 한다.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천시 공고 제2024-584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하여 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제4조의3)

다. 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7조)

-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02, FAX : 831-603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대대장”을 “1대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천팀장”을 “사천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6. KT사천지점장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11. 사천해양경찰서장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단,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육군제8962부대 4대대장	5. ---------- 1대대장
6. KT사천지사장	6. KT사천지점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장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사천팀장	10. ---------- 사천담당
11. 통영해양경찰서사천파출소장	11. 사천해양경찰서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실무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